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1. 29.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 11. 20.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 11. 2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아동청소년과장

### 가. 제안이유

구립청소년독서실을 신규 조성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사무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필요성

-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청소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휴식공간을 제공하며,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운영
- 청소년독서실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청소년독서실 시설·장비·비품·물품 등의 이용 및 유지관리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위탁시설개요

구 분	공덕 청소년독서실	아현 청소년독서실	연남 청소년독서실
명칭	공덕 스페이스	아현 스페이스	연남 스페이스
소재지	공덕동 370-4, 1층	아현동 770, 2층	연남동 361-7, 2층
전용면적	211㎡	205㎡	86㎡
내용	열람실 52석 및 휴게공간 관리	열람실 61석 및 휴게공간 관리	열람실 21석 및 휴게공간 관리
인력	3명	3명	3명
추진일정 (위탁운영 기간)	2024. 1. ~ 2. 민간위탁업체 공고 및 선정 (2024. 3. 1. ~ 2026. 2. 28.)	2024. 1. ~ 3. 조성 추진 2024. 4. 개소 예정 (2024. 4. 1. ~ 2026. 2. 28.)	2024. 7. 준공 예정 2024. 8. 조성 추진 2024. 9. 개소 예정 (2024. 9. 1. ~ 2026. 2. 28.)

5) 민간위탁기간: 2년(2024. 3. 1. ~ 2026. 2. 28.)

6)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7) 소요예산(2024년 예산 기준) : 326,716천원(구비)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24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목	세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26,716	- 공덕스페이스: 152,206 - 아현스페이스: 115,934 - 연남스페이스: 58,576	2024년 운영기간에 따라 운영비 산출

## 8) 추진일정

- 2023. 12. ~ 2024. 1: 위탁 업체 모집 공고 및 접수(※공개모집)
- 2024. 2: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선정)
- 2024. 2. 23한: 위탁 협약 체결
- 2024. 3: 위탁사무 운영 추진

## 다.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로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임.

○ 본 위탁 동의안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청소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운영사무의 위탁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나, 신규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청소년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1. 관련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3. 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청소년기본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12.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2023.3.9.>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